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3. . .<br>(제 회) |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총리 한덕수<br>(행정안전부 소관) |
| 제출 연월일 | 2023.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일부 개정('23. 1. 3. 공포, '23. 7.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안 제4조의2 신설)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행안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를 할 수 있음

나.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기부 명문화(안 제4조제3항, 별지서식 등)

-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기부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명확히 함
- 지자체가 기부금 접수 시 외국국적동포 본인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확인을 추가함.
- 기부금 접수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무를 위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추가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4.28. ~ 6. 7.)

3) 행정규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초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부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기부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기부금액               | 금 원(₩ )                 |                             |
| 기부대상<br>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                             |
| 답례품                |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신청 [ ] |                             |
|                    |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함 [ ]    |                             |
|                    |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 [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자치단체 귀하

|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 1. 주민등록표 초본<br>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br>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수수료<br>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가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위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자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작성하여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답례품에 관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답례품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본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합니다)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접수기관에서 기부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가 신청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고향사랑 기부금을 연말정산 세액공제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제공하여 업무처리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부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없고, 직접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자 (서명 또는 인)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② (생략)                                                                                                                                               |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u>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u> 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③ -----<br>-----<br>-----<br>-----<br>----- <u>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u> -----<br>-----.<br>-----<br>-----<br>-----. |
| ④ ~ ⑥ (생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u>제4조의2(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u> ① <u>법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한다.</u>                                                      |
|                                                                                                                                                                                  | <u>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u>                                        |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업무가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br>-----<br>-----                                                                                         |

그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② (생략)

-----  
-----  
-----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1. ~ 4. (현행과 같음)

5. -----  
-----  
--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
| 연 락 처         | (044) 205 - 3509 |